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

201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6. 6. 16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5억 9천 9백만원
- 징수결정액 : 6억 2천 2백만원
- 실제수납액 : 6억 1천 6백만원
- 미수납액 : 6백만원
- 결손처분 : 0백만원
- 다음연도이월액 : 0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9%(전연도 100%)임.

<201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599	622	616	6	99.0%
세외수입	10	58	52	6	89.5%
경상적세외수입	2	3	3	-	100%
재산임대수입	2	3	3	-	100%
공유재산임대료	2	3	3	-	100%
이자수입	-	-	-	-	-
기타이자수입	-	-	-	-	-
임시적세외수입	8	55	49	6	88.8%
기타수입	8	55	49	6	88.8%
시·도비반환금수입	8	25	20	5	79.9%
그외수입	-	30	29	1	96.6%
국고보조금	589	564	564	-	100%

2. 세출결산

- 예산액 : 33억 8천 4백 만 원
- 예산증감 : 0백 만 원
- 예산현액 : 33억 8천 4백 만 원
- 지출액 : 32억 2천 3백 만 원
- 이월액 : 0백 만 원
- 불용액 : 1억 6천 1백 만 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4.8%(전연도 9.7%) 발생

< 2015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율 (%)
총 예산		3,384	3,223	0	161	4.8
사업예산계		3,220	3,081	0	139	4.3
비 상 대 비 · 민 방 위	을지연습 실시	292	288	0	4	1.4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66	58	0	8	12.1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31	4	0	27	87.1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606	606	0	0	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12	104	0	8	7.0
	민방위교육장 운영	249	233	0	16	6.4
	통합방위협의회 등 운영	60	53	0	7	11.7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61	55	0	6	9.8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376	364	0	12	3.2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220	220	0	0	0
	민방위 장비 보급확충	70	68	0	2	2.9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601	601	0	0	0
	사회복무요원 관리	476	427	0	49	10.3
일반예산계		164	142	0	22	13.4
기본경비		164	142	0	22	13.4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 총 2건, 1억 3천 5백만원
- 민방위 교육장 운영 사무관리비 : 6천 3백만원
- 민방위 교육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7천 2백만원

다. 예산 이체 : 해당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총 2건, 2억 3천 6백만원
-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 2억 1천 6백만원
- 을지연습 실시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 총 2천만원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금수령(확보)액			집행액			집행잔액(불용액)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총계	1,213,537	564,279	649,258	1,211,371	564,279	647,092	2,166	0	2,166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606,122	286,779	319,343	606,122	286,779	319,343	0	0	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601,250	277,500	323,750	601,250	277,500	323,750	0	0	0
인력동원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6,165	0	6,165	3,999	0	3,999	2,166	0	2,166

3. 기금결산 : 해당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없음.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5연도말 비상기획관 소관 공유재산 :

- 건물 2562.35㎡ 456백만원,

- 기타 1건 33백만원,

총 4억 8천 9백만원 상당의 금액

< 2015회계연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5연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489	0	0	489
행정 재산	계	489	0	0	489
	공공용재산	489	0	0	489
	공용재산	0	0	0	0
	기업용재산	0	0	0	0
	보존재산	0	0	0	0
일반재산		0	0	0	0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15연도말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83개, 현재액 3억 1천 3백만원

< 2015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14연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5연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80	3	-	3	-	-	-	83
	금액	309	4	-	4	-	-	-	313
일반 회계	수량	80	3	-	3	-	-	-	83
	금액	309	4	-	4	-	-	-	313

Ⅱ . 검토의견

1. 세입결산

가. 보조금반환금수입 예산 운용 철저

- 비상기획관 세출예산 중 25개 자치구로 교부하여 집행하고 있는 보조예산의 집행잔액현황과 그 집행잔액에 대한 세입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전연도에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의 규모와 다음연도 세입 중 시·도비반환금수입이 매년 불일치하고 있는 바,
- 향후 보조예산의 경우는 집행비율에 따른 정확한 정산·결산 및 반납금의 적기 반납처리(세입조치) 등 보조금(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관련 예산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 된다고 하겠음.

〈보조예산 집행현황 및 반납현황〉

(단위 : 원)

집행연도	시비집행잔액(A)	반납연도	시비반납액(B)	차액(A-B)
2010	3,740,803	2011	2,880,580	860,223
2011	5,676,270	2012	6,537,270	△861,000
2012	12,490,554	2013	11,144,900	1,345,654
2013	3,555,960	2014	3,973,960	△418,000
2014	25,351,860	2015	20,280,330	5,071,530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의 실적보고)
- 결산절차
 - 당해연도 사업은 12월말 종료 후 관련 법률에 의거 익연도 2월경 국민안전처의 결산 실시 통보 시, 국고보조사업 결산보고서 서식에 의거 자치구에 수합 후 결산 결과 통보(국민안전처)
- 반납절차
 - 결산 후 집행잔액은 재무과(국비), 세무과(시비)에 고지서 발급의뢰 후 해당 자치구에 통보 12월말까지 잔액 반납
 - 국비(구 → 시 → 국고 반납) · 시비(구 → 시 반납) : 시세입처리

나. 과학적인 세입예산운용 대책수립 요망

-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9%로 세입징수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보여지나,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 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경우는 예산액(1,725천원) 대비 실제수납액(3,084천원)이 과다하게 차이가 발생(예산대비 수납액 비율 178.7%)하고 있고,
 - ‘시·도비반환금수입’의 경우도 예산액(8,345천원) 대비 실제수납액(20,273천원)이 과다하게 차이가 발생(예산대비 수납액 비율 242.9%)하고 있을 뿐 아니라,
 - ‘그외수입’과 같이 당초 예산은 편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입이 발생(28,273천원)하여 세입조치한 예산과목도 있는바,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추계기법에 의하지 아니한 주먹구구식 세입예산편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음.

<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현황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경상적세외수입	1,725	3,313	3,313	0
공유재산임대료 등	1,725	3,084	3,084	0
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	8,345	54,676	48,553	6,123
시·도비반환금수입	8,345	25,351	20,280	5,071
그외수입	0	29,325	28,273	1,051
국고보조금	588,792	564,279	564,279	0

- 비상기획관은 향후 세입예산 편성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입발생 사안별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결산

가. 예산 과다 불용사업의 문제

-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3,384백만원) 대비 불용률(집행잔액 161백만원)은 4.7%(전연도 9.7%)로 전연도 대비 5%가량 감소하였으나, 서울시 전체 규모(2.3%) 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이상 불용액 발생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지원관리	사무관리비	4,815	2,648	2,166	45.0	인쇄비용절감 및 대관료 차액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지원관리	행사실비보상금	24,500	0	24,500	100.0	국민안전처에서 총무훈련 보상금 24,500천원을 교부 받아, 국고로 대체 집행하여 불용액 발생
민방위교육장 운영	공공운영비	48,112	37,559	10,552	21.9	에너지절약 대책에 따른 전기료 절감 및 공공요금 절감으로 불용액발생
사회복무요원 관리	공공운영비	8,805	7,041	1,763	20.0	사무복무요원 배정인원 감소로 책임보험료 납부 인원감소로 불용액발생
기본경비	국내여비	51,800	35,299	16,500	31.9	메르스, 북핵포사격등 비상근무 실시로 출장 자제하여 불용액 발생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120	9,900	3,220	24.5	감사원지적사항 4급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불가에 의한 불용액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50	5	45	90.0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납부액으로 자치구 반납 실적 저조로 불용액 발생

1)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지원관리 사업 관련

-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지원관리”중 ‘사무관리비’는 불용액(2,166천원, 45%)이 과대하게 발생하였는 바, 집행부에서는 인쇄비용절감 및 대관료 차액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대략적이고 포괄적인 지출계획과 부실한 수요예측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예산 편성시 면밀한 사업목적 및 추진계획에 따른 적정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사업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민안전처 (2015년 충무훈련 계획통보-비상대비훈련과 : 2015.4.30)에서 충무훈련 보상금(24,500천원)을 교부 받아 국고로 대체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국고 납입(3년마다 서울시에 예산 배정)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바, 이와 같은 안이한 예산 편성·집행 사례의 경우는 집행부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사실비보상금 관련 2013년 28,000천원, 2014년 25,200천원이 예산 편성되어 100% 집행되었으며, 2015연도에는 24,500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국민안전처 충무훈련보상금을 교부받아 대체 집행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됨.

-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메르스와 북한 포사격 등 비상근무 실시로 출장을 자제하여 여비가 미집행되어 불용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매년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성과 필요성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비상기획관 소관 국내여비 현황 추이>

(단위: 천원)

연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2015년	기본경비	국내여비	51,880	40,741	11,058	21.3
2014년	기본경비	국내여비	51,880	42,177	9,622	27.7
2013년	기본경비	국내여비	51,880	35,299	16,500	31.9

2) 사회복지무요원관리 공공운영비 관련

- “사회복지무요원관리”사업 중 ‘사회복지무요원 보상금’은 전연도(201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불용률(27.7%)이 높은 사업으로 지적되었으며, 2015회계연도에는 9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결과 불용률(20%, 1,763천원)이 높게 나타난 바,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한 예산 조정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사회복지무요원관리 공공운영비 현황 추이>

(단위: 천원)

연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2015년	사회복지무요원관리	사회복지무요원 보상금	460,276	412,908	47,368	10.3
2014년	사회복지무요원관리	사회복지무요원 보상금	558,012	403,262	154,750	27.7
2013년	사회복지무요원관리	사회복지무요원 보상금	556,082	481,538	74,544	13.4

3)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

- “반환금 및 기타” 중 ‘국고보조금 반환’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납부액으로 자치구 반납 실적 저조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보다 그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전액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치밀한 준비와 예측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 매년 관행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바, 비상기획관은 각 사업별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다음연도 예산심사시에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예산의 삭감조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예측가능한 예산의 전용 집행

- 비상기획관 소관의 예산전용은 1건으로, 민방위교육장 청소근로자의 임금협약 체결결과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부족분 지급을 위해 “민방위교육장 운영”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백만원을 전용하였음.
- 그러나, 이는 서울시(시장방침 2014. 2)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설고용을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근무자의 준공무직으로의 전환)함에 따라 2014 회계연도에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급을 위해 예산을 전용(56,321천원)한 바가 있고, 2015년도 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이미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비용 증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겠음.
- 또한, 본건과 같이 2015년 12월 3일 예산을 전용(7백만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용액(60만원)이 발생한바, 이는 정확한 소요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전용한 결과라 하겠음.

< 민방위교육장 운영 사업의 예산전용 현황 >

(단위: 천원)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사 유
		감액	증액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2,000		7,200	79,680	79,086	593	민방위교육장 청소근로자 임금협약 체결결과 <u>가족수당 지급 확정</u> <u>통보로 부족분 전용</u>

-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되어야 하며,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활용되어야 하는 제도로, 향후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친 실소요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검토

- ‘예비군 관련 수방사지원’¹⁾은 지역예비군 훈련 전·후 정비를 위한 예비군 훈련대의 편의시설 설치, 향토방위작전용 지하공동구 TRS중계기 설치 및 예비군 안보 교육용 대형 TV 설치를 위하여 전년(2014년) 대비 3천 8백만원(11.4%)이 증액된 3억 7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천 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한 예산 조정 등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예산 추이〉

(단위: 천원)

년 도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2016년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372,000		
2015년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375,500	363,852	11,647
2014년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	337,120	0	0

1) 동 사업은 2015연도까지 세부사업명이 “예비군 관련 수방사지원”이었으나, 2016연도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음.

- 특히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중 ‘예비군 편의시설(3억원)’은 52사단(박달훈련장·내곡훈련장)과 56보병사단(구파발훈련장)등에 편의시설을 완비하는 것으로, 2014년 보조금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은 ‘안보교육용 대형TV(7천 2백만원)’를 예비군훈련장 안보교육관 9개소에 설치(18대)하려던 것이었으나, 구매하기로 한 TV 대수를 줄여 남은 보조금을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이월하여 2015년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회계처리상 문제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었음.

- 또한, 2015회계연도 예산 중 당초 배정되지 않은 향방작전용 드론(2대)을 예산집행잔액으로 구매하여 임의변경 사용하는 등 편법적인 예산집행을 하였는바, 향후 보조금 보조 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 및 정산 반납 등 편성된 보조예산의 집행 및 정산 반납 회계처리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집행부는 예비군 육성지원금 집행 규정 준수 요청(민방위담당관-3459호, '16.2.29.), 2016년 예비군 육성지원금 교부계획 수립(민방위담당관-5927호, '16.4.12.), 2016년 예비군 육성지원금 교부 통보(민방위담당관-6056호, '16.4.14.) 등을 통하여 예비군 육성지원금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힘.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